

예 산 총 칙

200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94,095,719	8,822,872
일반회계	248,786,000	7,463,580
일반회계	248,786,000	7,463,580
기타특별회계	45,309,719	1,359,292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26,844	30,805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95,740	29,872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32,968	9,989
주택사업특별회계	95,257	2,85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5,096,105	752,883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42,858	13,286
치수사업특별회계	919,947	27,59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00,000	9,000
기반시설특별회계	100,000	3,000
원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	16,000,000	480,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08,11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